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1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

가. 문제 출제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2,300 → 3,000원

나. 문제 채점 수당

- 주관식 { 10부까지 기본료 25,000 → 30,000원
 1부초과 660 → 800원

다. 면접시험종사원 수당(일당) 6,000 → 6,500원

라. 감시 수당(일당)
 - 평일 6,000 → 6,500원

3. 근거법령

-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

- 첨부 : 1.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 2. 신구조문 대비표
 3. 기타 참고자료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(별표)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1996. 1. 1. 부터 시행한다